

장애인 개인예산제 시범사업, 16개 시군구 추가 선정하여 자기결정권 보장

- 시범사업 시행 시군구가 2025년 17개에서 2026년 33개로 확대 -
- 전국 17개 광역지방자치단체 모두 참여 -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장애인 개인예산제 시범사업에 참여할 지방자치단체 공모를 통해, 16개 기초지방자치단체를 추가 선정했다. 이에 시범사업 시행 지역은 기존 17개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 33개로 확대될 예정이다. 이번 공모를 통해 전국 17개 광역지방자치단체 모두 시범사업에 참여하게 된다.

<2026년 장애인 개인예산제 시범사업 참여 지자체>

시도	시군구	시도	시군구
서울	강북구, 관악구, 도봉구, 은평구, 중랑구	강원	강릉시, 춘천시
인천	계양구	충북	청주시
부산	금정구	충남	예산군
대구	달성군	전북	익산시, 고창군
광주	서구, 남구	전남	해남군, 나주시, 광양시, 담양군, 영암군
대전	동구, 서구, 대덕구, 중구	경북	구미시
울산	울주군	경남	창원시
세종	세종시	제주	제주시
경기	시흥시, 남양주시, 연천군		

※ : 신규 참여 지자체

장애인 개인예산제는 기존의 공급자 중심의 서비스 제공방식에서 벗어나 장애인 당사자가 주어진 예산 범위 내에서 자신의 욕구와 상황에 맞게 필요한 서비스를 선택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참여자들은 수급자격이 있는 4개 이용권(바우처)* 급여의 20% 내에서 필요한 만큼을 개인예산으로 활용(2026년 1인당 월평균 약 42만 원)할 수 있다. 개인예산 이용계획을 수립한 뒤, 개인예산으로 장애 특성에 맞게 필요한 재화 또는 서비스를 자유롭게 선택하여 이용할 수 있다. 단, 주류, 담배 등 일부 지원이 불가능한 항목은 제외된다.

* 장애인 활동지원,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청소년 발달장애인 방과후 활동, 발달재활

보건복지부는 2025년 17개 시군구의 장애인 410명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실시하였고, 8개 시군구에서는 ‘활동지원 기반 모델’을, 9개 시군구에서는 ‘바우처 확대 모델’을 운영하였다. 올해 시범사업은 작년보다 규모를 확대하여 33개 시군구의 장애인 960명 대상으로 진행할 예정이며, 33개 시군구 모두 ‘바우처 확대 모델’을 공통으로 운영하여 참여자 범위가 더욱 확대될 예정이다.

※ (활동지원 기반 모델) 장애인 활동지원 수급자격이 있는 장애인 참여 가능
(바우처 확대 모델) 장애인 활동지원, 성인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청소년 발달장애인 방과후 활동, 발달재활 중 1개 이상 수급자격이 있는 장애인 참여 가능

장애인 개인예산제를 활용하면 기존에 수급하던 4개 바우처로는 이용할 수 없었던 장애로 인한 불편을 덜어줄 수 있는 보조기기 등을 구입하거나 학습, 예술·체육활동 등 보다 다양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어 서비스 선택권이 확대되는 효과가 있다.

<장애인 개인예산제 이용 사례>

- **(사례1)** 김00씨(발달장애인)는 악기연주에 흥미가 있으나 지역 내 원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청소년 발달장애인 방과후 활동 서비스 제공 기관이 없음 → 방과후 활동 급여 일부를 개인예산으로 활용하여 인근 음악학원에서 바이올린 교습 및 악보 등 교구를 구입하여 방과후에 원하는 활동을 할 수 있게 됨
- **(사례2)** 박00씨(뇌병변장애인)는 지체장애인 남편 및 노모와 거주하여 혼자 움직일 수 없어 출퇴근 등 이동 시 활동지원사의 지원에 의존함 → 모션베드, 직립보조기 등 보조기기를 개인예산으로 구매하여 활동지원사가 오기 전 혼자 보조기기를 조작하여 일어나 출퇴근 준비가 가능하게 됨

보건복지부는 추가 선정된 신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사업설명회 및 기본 매뉴얼 교육을 진행하고, 2월 중 참여자를 모집하여 5월부터 6개월간 개인예산 급여를 이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운영할 계획이다.

차전경 장애인정책국장은 “장애인 개인예산제를 통해 장애인들이 개별적인 특성과 상황에 맞는 재화와 서비스를 선택함으로써, 장애인의 자기결정권을 보장하고 서비스 선택권을 넓힐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며, “현장 의견을 청취하고 정보시스템을 개선하는 등 장애인 개인예산제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지속 노력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붙임> 장애인 개인예산제 시범사업 개요

담당 부서	장애인정책국 장애인정책과	책임자	과 장	성재경 (044-202-3280)
		담당자	사무관	안현빈 (044-202-3287)



□ 장애인 개인예산제 시범사업 개요

※ “장애인 개인예산제”란? 획일적인 서비스 제공방식에서 벗어나 장애인이 자신의 욕구에 따라 유연하게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

○ (추진배경) 공급자에서 수요자 중심의 정책 전환과 서비스 선택권 강화를 위해 장애인 개인예산제 시범사업 운영('24.7월~)

○ (사업대상) 4개 바우처* 중 1개 이상 수급자격이 있는 장애인

* ①활동지원, ②발달장애인 주간활동, ③발달장애인 방과후 활동, ④발달재활

- ('25) 410명, 17개 시군구 → ('26) 960명, 33개 시군구로 확대

시도	시군구	시도	시군구
서울	강북구, 관악구, 도봉구, 은평구, 중랑구	강원	강릉시, 춘천시
인천	계양구	충북	청주시
부산	금정구	충남	예산군
대구	달성군	전북	익산시, 고창군
광주	서구, 남구	전남	해남군, 나주시, 광양시, 담양군, 영암군
대전	동구, 서구, 대덕구, 중구	경북	구미시
울산	울주군	경남	창원시
세종	세종시	제주	제주시
경기	시흥시, 남양주시, 연천군		

※ : 신규 참여 지자체

○ (개인예산액) 참여자가 수급자격이 있는 4개 바우처 급여량 중 일부 (20% 이내)를 개인예산으로 할당하여 이용

○ (이용방식) 참여자의 개인욕구를 반영한 이용계획 수립*으로 일상 생활과 사회활동에 필요한 재화 및 서비스를 이용

* 장애인복지관 등 전문기관이 개인예산 이용계획 수립 및 지역자원 발굴·연계 등 지원

○ (이용범위) ①개인예산 이용계획 포함, ②급여의 기본 요건(장애 연관성, 목표 연관성, 가격의 적정성) 충족 시 자유롭게 선택·이용

* 지원 불가항목 : 주류·담배·복권 구입, 세금·공과금, 저축·부채상환 등 지출에 명시

○ (추진일정) 신규 참여지역 설명회(1월) → 참여자 모집 및 교육(2월) → 이용계획 수립(3~4월) → 개인예산 급여 개시(5월~10월, 6개월)